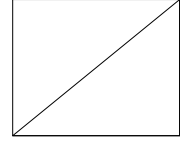


【비공개】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25-01호
의결 연월일	2025. 1. 13. (25년 제1차)

의결안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제출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제출연월일	2025. 1. 13.

---

# 목 차

---

I. 검토배경 .....	1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	1
2. 국회의 대응 등 .....	2
3.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구속 및 공소제기 .....	3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 .....	4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체포 찬반 시위의 격화 .....	4
6. 인권 관련성 .....	5
II. 판단 기준 .....	5
1. 인권 관련 .....	5
2.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	5
3. 탄핵소추 관련 .....	5
III. 판단 .....	6
1.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	6
2. 헌법재판 관련 .....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중앙지역군사법원 관련 .....	11
4.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관련 .....	14
IV. 의결이 필요한 사항 .....	15
1. 권고 주문(안)에 대한 의결 .....	15
2. 권고 주문(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 시한을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결 .....	15
V. 주문(안) .....	15

---

#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긴급)

---

## I. 검토배경

###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3:25경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23:30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를 발령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날인 12. 4. 01:01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되자 12. 4. 05:40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나. 계엄 선포 후 약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었는데 총기 발사 사례는 없었고,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로 들어가 12. 4. 01:01경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국회의원 190명 등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하여는 드러난 것이 없으며, 국회의 기물 파손 등에 관하여도 집계된 것이 없다. 그러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

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계엄 선포에 이은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국회의 22건에 이르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한 사법업무 마비와 행정부 마비, 국회의 주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한 국가 본질 기능 훼손,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 초래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고, 2024. 12. 12.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였다.

## 2. 국회의 대응 등

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 아래 2024. 12. 4. 01:01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해제하게 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로 단정하면서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고,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탄핵소추안은 12. 7.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회의원 195명만이 투표를 함으로써 부결이 확실시되자 국회의장은 개표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하였다.

나. 국회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 아래 12. 1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비슷하나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탄핵소추안은 12. 14.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져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국회는 그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서를 접수시켰다(2024헌나8).

다. 그 밖에도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검사 등에 대한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제헌 국회 이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70여년 동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경우는 22건에 그쳤다.

라.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은 2025. 1. 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피청구인 측은 만일 당초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결여를 이유로 헌법 재판소가 즉시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 3.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구속 및 공소제기

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등 수사기관들은 2024. 12. 4.부터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엄 선포 당시의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관들은 예외없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는 내란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구속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

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이순형 부장판사가 이를 발부하였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영장 담당 법관에 대한 쇼핑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2025. 1.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거부에 막혀 체포 영장 집행이 좌절되었다.

나. 공수처는 2025. 1. 6. 경찰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도록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 재신청을 하였다.

####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체포 찬반 시위의 격화

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데 이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자,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위는 광화문 일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광화문 일대 외에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도 빈발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대립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에 대하여 시급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위대 간의 충돌이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6. 인권 관련성

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국회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거듭된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계엄 선포에 관련된 국방부장관 및 고위 군지휘관 등에 대한 신병구속과 형사재판 진행, 대규모 군중 시위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관련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적정한 권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II. 판단 기준

### 1. 인권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 2.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77조(계엄)

### 3. 탄핵소추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65조(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 Ⅲ. 판단

#### 1.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 가. 사실 관계 및 법리

-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탄핵소추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으로서 제헌 국회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70여년 간 발의된 탄핵소추안 22건을 넉넉히 초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중요 국가기관장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 등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포함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한 바 있다.
- 3)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장관급 국가기관장과 검사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국가기관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 의결 이전에 스스로 직을 사퇴한



사례들도 있다.

- 4)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여러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나, 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유일한 사유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2024. 12. 26.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쳤음에도 국무총리 한덕수가 임명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는 그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날인 2024. 12. 27.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장관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4. 12. 31.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였다.

#### 나. 위기 극복 방안

- 1)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오로지 그 숫자의 힘을 동원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을 외포시키는 강압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강압의 행사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 2)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

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 그렇다면,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즉각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세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고, 가사 정당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는 향후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헌법재판 관련

### 가. 사실관계 및 법리

- 1) 대통령 윤석열은 2회에 걸친 담화문 등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7조(계엄)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마비시키고, 검사들의 범죄수사권을 정지시키는가 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입법권을 남용하여 특별검사법률안을 거듭하여 의결하는 것, 예산심사권을 남용하여 국가기관 전반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전사·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되었고, 이에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수궁하는 국민도 있고, 수궁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할 것이고, 국민여론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유동적이라 할 것이다.

- 2)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 4) 헌법재판소의 2025. 1. 3.자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 준하여 피청구인, 즉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에 관련된 다수의 형사소송이 겨우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는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도 아니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형사소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함이 상당하다.

5)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은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예 내놓고 무시하면서 재판을 수년 간 끌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 행사로 당선된 피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으로서 일반 선거법에 관한 재판 사건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에 구애될 이유가 전혀 없다.

6)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으로서 정당한 탄핵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속하게 기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장관은 경제관료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이므로 국정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여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

행하게 함이 상당하다. 물론, 국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한다면 간단하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늦출 수는 없다.

#### 나. 위기 극복 방안

- 1)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정상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관료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이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 2)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다수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규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구애될 이유가 없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중앙지역군사법원 관련

#### 가. 사실관계 및 법리

- 1) 계엄 선포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이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계엄 선포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마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계엄 선포 관련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소속의 법관들은 계엄 선포에 관련되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였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됨으로써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구속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갖가지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불구속재판을 받으며 방어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의 경우는 1심과 2심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수년 간 불구속재판의 온갖 혜택을 누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영장 발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나아가 그것이 내란죄를 구성하기까지 하는지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2024. 12. 9. 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이라는 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단하고 마구잡이식 영장

발부에 나선 것은 크게 개탄할 일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 재판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 4)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장관이나 군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며,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나. 위기 극복 방안

- 1)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영장 담당 법관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 2) 법관의 독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재판을 외면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 관련 형사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구속재판을 실현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관련

##### 가. 사실관계 및 법리

- 1) 앞서 살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나 언론에서 내란죄 성립을 기정 사실화한다고 하여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무죄추정원칙은 수사기관이 먼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그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진술 거부의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는 출석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관과의 사이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불성립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거듭하고,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법관 소평을 통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에 나선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 3)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는 공수처법의 규정상 명백한 사항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 꼬리를 잡고 있으니 코끼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나. 위기 극복 방안

수사기관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더구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 IV. 의결이 필요한 사항

#### 1. 권고 주문(안)에 대한 의결

아래에서 보는 권고 주문(안)을 의결함이 상당하다.

#### 2. 권고 주문(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 시한을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결

권고 주문(안)을 의결하는 이상 신속한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대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배할 경우 결정문에 반대 의견이 있음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미리 의결할 필요가 있다.

### V. 주문(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하여,

1.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과

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계엄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규정인 180일의 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